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66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최은석 · 한지아 · 박덕흠
김기웅 · 김상훈 · 배준영
유상범 · 이상희 · 최수진
김승수 · 박수영 · 이종욱
박성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 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공장을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렇듯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창업·신설과 동일한 지방투자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체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21조의3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하고,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 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 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u>신설</u>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 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u>신설</u>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 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 면) ① ----- ----- ----- ----- <u>신설 또는 증설</u> ----- -----, ----- ----- ----- <u>신설 또는 증설하</u> <u>는 경우로 한정하며, 증설한 부</u> <u>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u> <u>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